

마약성 진통제 “펜타닐(패취제)” 안전사용 안내서(의사용)

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펜타닐 패취제’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1. ‘펜타닐’은 어떤 약물인가요?

- ‘펜타닐’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**마약(아편계, 오피오이드계)**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로서,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
2. ‘펜타닐 패취제’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가요?

-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
- 만성통증 치료 시 **비약물적 치료**(인지행동 치료, 물리치료 등)를 우선해야 하며, 마약성 진통제를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 - 특히, 펜타닐 패취제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투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.

3. ‘펜타닐 패취제’는 얼마나 투여하나요?

- ‘펜타닐 패취제’ 1매를 3일(72시간) 사용 합니다.
- 가장 효과적인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며 초기 용량으로 시간당 25㎍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
4. ‘펜타닐 패취제’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미한 통증이나, 수시 처방이 필요한 간헐적인 통증의 조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환자의 알코올 및 중독성 약물 사용력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.
-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단 증상 등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합니다.
※ 하품, 재채기, 눈물흘림, 땀흘림, 구역, 구토, 설사, 복통, 동공 확대, 두통, 불면, 불안, 헛소리, 경련, 떨림,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, 호흡촉박, 가슴 두근 거림 등
-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 처방(1개월 초과)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- 다른 마약성 진통제, 수면제, 알코올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함께 복용 시 호흡억제,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**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포함)**를 기입하여야 하고, 처방전에 따라 조제 등 취급한 마약류의 내역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포함)와 함께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

-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,
※ 의사는 열람사실을 조회 전 환자에게 통보
-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제2항제3호
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

